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551
----------	-------

발의연월일 : 2026. 8. 12.

발 의 자 : 김성범 · 주철현 · 박정현
임미애 · 박균택 · 허영
김한규 · 문대림 · 윤후덕
윤준병 · 朴芝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시·사변·천재지변 등 비상사태, 설·추석 등 특정 기간의 교통수요 급증, 교통시설의 파손·재난의 발생·에너지 수요·공급의 차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은 교통수요의 급증이나 교통시설·에너지 공급의 차질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운송사업자의 운항 감축 등으로 교통수단의 공급 자체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특히 항공기는 대체교통수단이 제한적인 도서지역 주민에게 필수적인 교통수단으로서, 항공사의 기재 운용이나 정비, 경영 여건 등의 변화로 운항 횟수가 급격히 축소될 경우 주민의 이동권이 직접적으로 제약되고 물류 수송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특별교통대책 수립 사유에 교통수단 공급의 급감을 추가함으로써 항공기 등 교통수단의 공급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에도 대체교통수단 투입, 운항·노선 조정 등 필요한 대책을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제3호 신설).

법률 제 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항공기 운항 횟수의 급감 등 교통수단 공급의 급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특별교통대책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로 국가교통관리에 중대한 차 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 가 있는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 시 교통 대책(이하 “특별교통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제33조(특별교통대책의 수립) ① ----- ----- ----- ----- ----- ----- ----- ----- ----- -----.
1. · 2. (생 략) <u><신 설></u>	1. · 2. (현행과 같음)
<u>3. (생 략)</u>	<u>3. 항공기 운항 횟수의 급감</u> <u>등 교통수단 공급의 급감</u>
② (생 략)	<u>4. (현행 제3호와 같음)</u> ② (현행과 같음)